

인천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21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6884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6 선고 2019가단21148 판결

전문

원 고 A

피 고 B조합 (변경 전 : C조합)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 2020. 5. 19

판결 선고 2020.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가 소유하던 충남 태안군 E 답 1142㎡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2012. 3. 26.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6. 15.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7. 8. 9. 배당기일에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21,000,000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9,000,000원을 배당받고, 3순위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초과 분 7,256,573원과 50,276,094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4순위 잉여금으로 263,138,042원 및 17,922,410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분으로 배당받은 50,276,094원 중 39,000,000원은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가단4197)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8. 2. 22.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2095)에서도 2018. 11. 9.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면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 중 이자 3,9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

다. 원고는 이를 믿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약속 을 어기고 대출금 이자 전액을 배당받아갔다.

따라서 피고는 3,9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앞선 배당이의소송에서도 원고는 합의에 따라 이자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위 금액만큼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900만 원을 피고가 배당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인 '피고가 3,9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이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는, 결국 선행 배당이의소송에서의 판단 대상인 '피고가 3,900만 원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가'와 동일하다.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이미 선행 배당이의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즉, 앞선 확정판결과 달리 '피고가 3,900만 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니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영림